

2026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 징수 공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20445호)」 제4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2026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적립목표액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및 징수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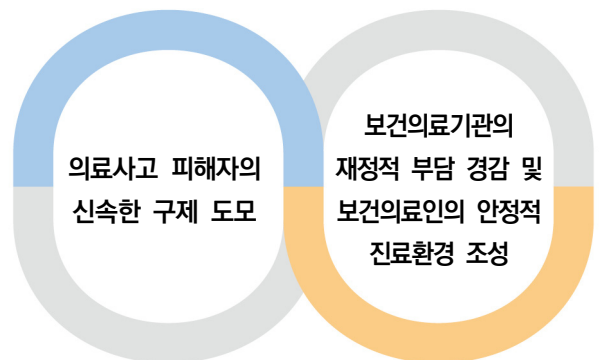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01.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개요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라 한다.)의 조정성립 등으로 확정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중재원이 우선 피해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추후 구상 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

※ 2012. 4. 8.부터 시행



02. 손해배상금 대불 대상

- (의료중재원)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 (법원)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03. 2026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 및 부과대상

- 적립 목표액: 145,424,570원
- 부과대상: '25년 보건의료기관 신규개설자 4,639명
 - * '25년 중 신규 요양기관기호를 부여받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대상
(단, '26. 3. 31. 이전 폐업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04. 2026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 산정기준: 최근 5년간 전체·기관별 의료분쟁 발생현황 및 대불제도 이용실적과 그 추이, 예상 대불비용, 대불비용 적립액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 보건의료기관의 종별 기준금액 정액 부담('25년 기준금액과 동일)

■ 보건의료기관 종별 대불비용 기준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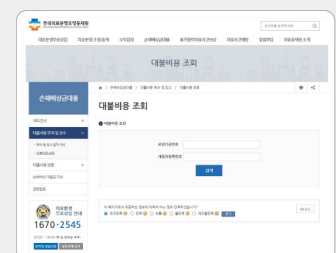
• 상급종합병원 6,336,700원	• 종합병원 1,069,260원	• 병원 111,030원	• 정신병원 72,170원
• 의원 39,650원	• 치과병원 111,030원	• 치과의원 39,650원	• 한방병원 74,020원
• 한의원 26,430원	• 요양병원 72,170원	• 보건의료원 111,030원	• 약국 10,000원
• 조산원 10,000원	• 보건소 10,000원	• 보건지소 10,000원	• 보건진료소 10,000원

05. 2026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조회 및 징수 안내

- 대불비용 부담액 조회
 -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공고(2026. 9. 1.)
 - '26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부담액 부과·징수 세부내용 공고
 -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조회
 - 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납부시기 등에 관한 납부고지서 발송
 - 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은 의료중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상시 조회 할 수 있음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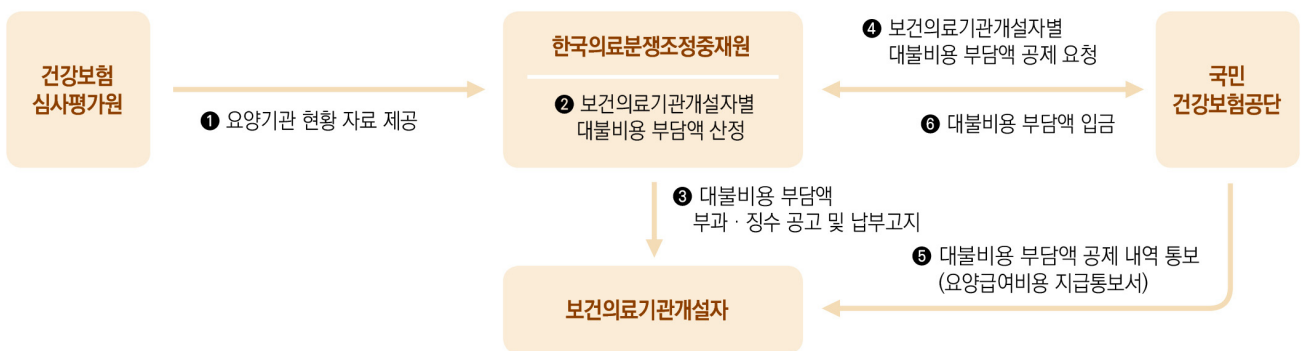
-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접속
- 2 「손해배상금 대불」(상단) 선택
- 3 「대불비용 부담액 조회」(좌측) 선택
- 4 요양기관기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대불비용 부담액 징수일 등

- 징수일: 공고일(2026. 9. 1.) 기준 3개월 후부터 '26.12.31.까지
- 징수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지급(「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제5항)
- 분할납부: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부담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경우 '대불비용 부담액 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음

06.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절차



07.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과에 관한 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 제2항: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액을 산정·부과·징수하며,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부과·징수 업무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항: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
 - 제1항: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불비용”이라 한다)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부담액을 산정·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불비용 재원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산정·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정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산정·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원장을 말하며,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은 제1항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의 범위에서 **최근 5년간의 전체·기관별 의료분쟁 발생현황 및 대불제도 이용실적과 그 추이, 예상 대불비용, 대불비용 적립액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 및 이에 따른 징수액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대불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08.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의 관리·운용

-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은 의료중재원의 일반 예산과는 별도로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운영
-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은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모든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서 납부하여 주신 소중한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전국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서 납부하여 주신 소중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며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